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. 7. 9 선고 2019가단624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5. 7.

판결 선고 2020. 7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19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현덕

별지